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2021-2022

2021-2022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 2021-2022 서울시민인권보고서

제2차 서울시 인권정책 기본계획



51-6110000-001606-11

서울특별시

SEOUL M&S



ISBN 979-11-6161-067-2

2021-2022  
**서울시민인권보고서**

제2차 서울시 인권정책 기본계획

**Intro** 06

2차와 3차 인권정책 기본계획의 변화

**시민의 생활 인권 확대** 08

- 1-3 청소년 보건사각지대 개선 ····· 14
- 1-5 데이트폭력, 디지털성범죄 해소 및 안심 대책 마련 ··· 16
- 1-7 사각지대 노인 돌봄지원 확대 ····· 20
- 1-9 위기다문화가족 등 이주민 인권보호 증진 ····· 23
- 1-12 유형별 장애인 자기결정권 강화를 통한 인권 증진 ··· 26
- 1-15 자살률을 현격하게 줄여가는 도시 ····· 30

**인권친화적 도시공간 조성** 32

- 2-2 세입자 권리보호 지속 추진 ····· 35
- 2-7 모두가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 37

**차이 존중의 인권문화 확산** 42

- 3-2 다양성 증진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편견 해소 ··· 45
- 3-4 문화소외시민을 배려하는 문화나눔 확대 ····· 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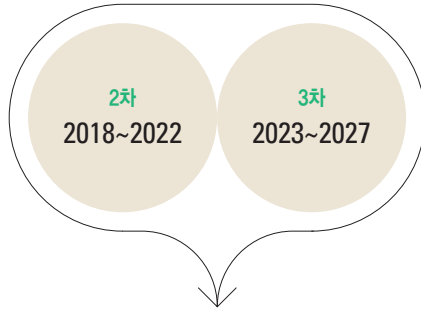
**인권제도 및 협치 강화** 50

- 4-2 인권정책 기본계획 이행 내실화 ····· 53
- 4-7 정보인권 및 알권리 강화 ····· 55

**Outro** 58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 2차와 3차 인권정책 기본계획의 변화



### 인권정책 기본계획 개요

- 근거: 서울시 인권기본조례 제7조  
– 시장은 시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성격: 시정에 인권 관점을 반영한 서울시 인권정책의 청사진
- 주기: 5개년 중기 계획

### 인권정책 기본계획의 흐름

-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은 인권의 기본가치로, 시정 핵심가치인 '사회적 약자와 동행'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사회적 약자와 함께 누리는 도시를 모토로 장애인, 위기 아동·청소년, 노인, 교통약자, 이주민의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 추진
- 주거, 소득, 건강 등 안정적인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시민요구 반영을 통한 현실 적합한 환경 개선과 건강권 보장을 위한 의료 등의 서비스질 제고
- 제2차 인권정책 기본계획 모니터링 결과 공통 추구사항으로 시정가치, 시민요구 등에 따라 공통 지향가치인 사회적 안전 보장을 위해 안전 약자 보호, 자살예방체계 구축, 도시 환경 확장 등의 방안 발굴
- 성 주류화 정책의 활성화와 인권교육 및 홍보와 함께 아동·청소년 참여제도를 활성화하고 청년의 참여권 보장, 정보인권 보호체계 구축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인권제도 및 문화 구축
- 삶의 질 격차를 존엄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줄어감으로써 사회적 약자와의 동행을 실현하고, 다양성 존중 등 인권 가치 실현으로 인권도시 구축

## 2차와 3차 인권정책 기본계획의 변화

구분	제2차 인권정책 기본계획(2018~2022)	제3차 인권정책 기본계획(2023~2027)
비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함께 누리고 포용하고 참여하는 인권특별시 서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더 나은 삶을 향한 동행, 인권도시 서울</li> </ul>
정책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권 공동체로서 서울시의 지향성을 제시했던 2차에서 3차는 더 나아가 공동체 안에서 모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비전을 제시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민의 생활 인권 확대</li> <li>• 인권 친화적 도시 공간 조성</li> <li>• 차이 존중의 인권 문화 확산</li> <li>• 인권 제도 및 협치 강화</li> </ul>
정책 (추진)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전히 인권의 사각지대가 해소되지 못하고 사회적 약자가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현 상황에서 사회적 약자를 부각시켜 정책 목표에 최우선적으로 배치함</li> <li>▶ 모든 시민의 안정적인 삶의 질 향상을 통해 누구나 비슷한 수준에서 인권도시에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리도록 함</li> <li>▶ 도시 공간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재난/참사, 폭력/학대, 안전사고 등에 대해 모든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사회적 안전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함</li> <li>▶ 기 구축된 인권제도 및 시민참여 활성화를 통해 인권문화 조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적 약자와 함께 누리는 도시</li> <li>• 안정적인 삶의 질 향상</li> <li>• 사회적 안전의 보장</li> <li>• 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와 문화적 기반 구축</li> </ul>
세부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7개(명칭: 추진과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4개(명칭: 정책과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시 인권환경 및 특성을 반영하여 시민의 인권보장 실현의 구체적인 방향성과 목표에 따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정책 과제들을 배치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0개(계속 30개, 신규 70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89개(계속 27개, 신규 62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인가구, 자립준비 청년, 청년 노동권 보호, 일터 내 차별 해소, 비정형 노동자 보호, 서울시민의 먹거리 보장, 공공의료체계 구축, 위기 아동·청소년 생활 지원 등을 새로운 인권적 쟁점으로 반영</li> </ul>	

# 1 시민의 생활 인권 확대

## 정책목표

우리 사회의 약자들이 평등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마련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사회보장, 건강, 교육, 안전 등의 생활 인권을 확대하기 위함



## 1

## 시민의 생활 인권 확대

### 청소년 보건사각지대 개선

#### 사업 내용

- 청소년 위생용품 지급
- 위기 청소년 공공의료 강화

#### 선정 이유

- 생필품인 위생용품 가격의 상승으로 일부 청소년이 부적절한 대체용품을 사용하는 등 사회 문제로 부각되고 있음. 2016년 '깎창' 생리대 사건 이후 생리대 지원 대상 확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으며 청소년 건강권 보장을 위해 저소득 청소년에 여성 위생용품 지원이 필요함
-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에 위생용품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과 발달자원을 위한 제도가 필요함

### 데이트 폭력·디지털 성범죄 해소 및 안심 대책 마련

#### 사업 내용

- 데이트 폭력·디지털 성범죄 인식개선 교육, 피해자 지원
- 24시간 스마트 안심망 '안심이' 구축 운영, 여성안심보안관 활동 강화

#### 선정 이유

- 데이트 폭력은 친밀한 관계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폭력으로 인식하기 어려우며, 폭행죄 신고 시 애정 문제로 치부되는 등 공적 지원 체계가 부족함. 현행법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자 지원 대책 및 시민 인식개선이 필요함
- 최근 사이버 성범죄가 증가하고 피해의 정도가 기존 범죄 이상으로 심각하여, 여성 스스로 당당히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안심 환경 구축이 필요함

## 1

## 시민의 생활 인권 확대

## 사각지대 노인 돌봄지원 확대

## 사업 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의 빈곤층 어르신 발굴·돌봄 지원
- '치매안심도시! 서울' 구현을 위한 치매지원센터 기능 강화
- 노인성질환자를 위한 데이케어센터(주야간보호) 지속적 확충

## 선정 이유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어르신 등 노인층 빈곤문제 해결이 필요함
- 노인성 질환인 '치매'의 경우 조기발견과 지속적인 치료·관리가 효과적인 것으로 보고됨에 따라 치매 조기발견을 통해 요양시설 입소율 감소와 요양비용 절감을 기대할 수 있음
- 치매 조기 예방·발견·치료 지원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필요

## 위기다문화가족 등 이주민 인권보호 증진

## 사업 내용

- 민감심터 운영지원 및 인권보호 프로그램 운영
- 위기 다문화 가족 안전망 지원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외국인근로자센터, 글로벌센터 운영 활성화

## 선정 이유

- 서울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은 40만 4천 명으로 총 인구 수 대비 4%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거소에 어려움을 겪는 이주민을 위해 임시적 피난처 제공이 필요함
- 폭력피해와 생활의 어려움을 겪는 여성 이주민들에게 전문상담을 제공하고 피해여성과 자녀에게 긴급 의식주 지원이 필요함

## 1

## 시민의 생활 인권 확대

## 유형별 장애인 자기결정권 강화를 통한 인권 증진

## 사업 내용

- 장애인권익옹호기관 기능 확대
- 발달장애인 전 생애 지원 서비스 제공
- 발달장애인 가할 중심의 복지 서비스 제공
- 시각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체계 효율화

## 선정 이유

- 장애인복지시설과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의 인권침해·학대사건 발생 시 신속한 지원을 위한 역할 강화
- 발달장애인을 지원하는 부모, 종사자, 전문가 등에게 발달장애 관련 지식·정보를 제공하고, 발달장애인 지원 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 질 높은 인적 기반 및 정보 구축·운영 필요
- 현재의 장애를 인정하는 상태에서 당사자가 삶을 즐길 수 있도록 사회적 인식과 환경을 변화시키는 가활(可活)이 필요함
- 시각장애인의 이동권 향상을 위해 장애인복지콜 이용요금 인하, 이용권택시 운영 등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성과를 거두었으나, 여전히 수요 대비 공급량 부족

## 자살률을 현격하게 줄여가는 도시

## 사업 내용

- 서울시 자살예방센터 운영
- 지역사회 기반 자살예방서비스 제공

## 선정 이유

- 2003년부터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가 지속되는 상황이며, 자치구별 자살률 격차는 2013년 1.8배, 2014년 2.3배, 2015년 2.0배로 나타남에 따라 자살률을 줄이기 위해 자치구별 자살률 격차 심화로 시민의 건강형평성 보장이 필요함
- 주민밀착형 자살예방사업 추진을 통해 자살예방 안전망 구축이 필요함

1

시민의 생활 인권 확대

세부과제 목록

1-1	<b>다양한 보육 서비스 확충</b>		
	① 아이 시설보육 서비스 확대	신규	가족담당관
	② 다양한 시설보육 서비스 확대	신규	보육담당관
1-2	<b>학교 밖 청소년 인권보호 및 증진</b>		
	① 대안교육기관 연계 지원 강화	신규	청소년정책과
	② 지역사회청소년 종합지원체계(CYS-Net) 구축	신규	청소년정책과
1-3	<b>청소년 보건사각지대 개선</b>		
	① 청소년 위생용품 지급	신규	청소년정책과
	② 위기 청소년 공공의료 강화	신규	여성정책담당관
1-4	<b>아르바이트 청소년 노동권 보호</b>		
	① 청소년 노동실태조사(연령, 직종, 성별)	계속	노동정책담당관
	② 청소년 노동권리홍보(연령, 직종, 성별)	계속	노동정책담당관
	③ 아르바이트 청소년 상담 및 권리구제 안내	신규	노동정책담당관
1-5	<b>데이트폭력·디지털성범죄 해소 및 안심 대책 마련</b>		
	① 데이트 폭력·디지털성범죄 인식개선교육	신규	여성정책담당관
	② 데이트폭력·디지털성범죄 피해지원	신규	여성정책담당관
	③ 24시간 스마트 안심망 '안심이' 구축 및 운영	신규	여성정책담당관
	④ 몰카 근절을 위한 여성안심보안관 활동 강화	신규	여성정책담당관
1-6	<b>한부모가족의 자립지원 강화</b>		
	① 저소득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	신규	가족담당관
	②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자립역량 강화	신규	가족담당관
	③ 자립지원을 위한 한부모(미혼모) 생활코디네이터	신규	가족담당관
	④ 미혼모(한부모)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신규	가족담당관
1-7	<b>사각지대 노인 돌봄지원 확대</b>		
	① 국민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의 빈곤층 어르신 발굴·돌봄 지원	계속	어르신복지과
	② 치매지원센터 기능강화로 '치매안심도시 서울' 구현	신규	건강증진과
	③ 치매 등 노인성질환자를 위한 데이케어센터 지속적 확충	신규	어르신복지과
1-8	<b>노인과 돌봄 인력이 함께 존중받는 환경 조성</b>		
	① 어르신 돌봄 종사자 지원센터 권역별 확충운영	계속	어르신복지과
	② 요양보호사 지원단 확대 지원	계속	어르신복지과
	③ 돌봄 노동자 및 어르신 인권교육	신규	어르신복지과

1

시민의 생활 인권 확대

1-9	<b>위기다문화가족 등 이주민 인권보호 증진</b>		
	① 민간 쉼터 운영 지원 및 인권보호 프로그램 운영	계속	외국인다문화담당관
	② 위기다문화 가족 안전망 지원	신규	외국인다문화담당관
	③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외국인근로자센터, 글로벌센터 운영 활성화	계속	외국인다문화담당관
1-10	<b>이주민 의료건강권 확대</b>		
	① 외국인 근로자 등 이주민 의료비 지원	계속	보건의료정책과
	② 의료비 지원대상자 연계 간병 및 의료통역서비스 지원	계속	보건의료정책과
1-11	<b>북한이탈주민 복지사각지대 지원</b>		
	① 취업교육 및 맞춤형 취업 지원	신규	자치행정과
	② 서울의료원 연계 치과 진료 지원	신규	자치행정과
	③ 북한이탈주민 자녀 가정 심리상담 지원	신규	자치행정과
1-12	<b>유형별 장애인 자기결정권 강화를 통한 인권증진</b>		
	① 장애인인권센터 기능 확대	신규	장애인복지정책과
	② 발달장애인 전 생애 지원서비스 제공	신규	장애인복지정책과
	③ 발달장애인 가할 중심의 복지 서비스 제공	신규	장애인복지정책과
	④ 시각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체계 효율화	신규	장애인복지정책과
1-13	<b>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취약 근로자 보호</b>		
	① 무기계약직 전면 정규직 전환	계속	노동정책담당관
	② 서울시 생활임금 적용 확대	신규	노동정책담당관
	③ 서울형 노동시간 단축 추진	신규	노동정책담당관
1-14	<b>상생협력 대책 마련</b>		
	① 불공정피해상담센터 기능 확대	신규	공정경제과
	② 프랜차이즈 불공정거래관행 실태조사 진행	신규	공정경제과
	③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대상 노동환경 실태조사 실시	신규	공정경제과
1-15	<b>자살률을 현격하게 줄여가는 도시</b>		
	① 서울시 자살예방센터 운영	계속	보건의료정책과
	② 지역사회 기반 자살예방서비스 제공	계속	보건의료정책과
1-16	<b>이주배경 자녀의 교육환경 개선 및 정착생활 지원</b>		
① 중도입국 자녀 중점 교육기관 운영	신규	외국인다문화담당관	

## 청소년 보건사각지대 개선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 필요성

- 생필품인 위생용품(생리대) 가격의 상승으로 일부 청소년이 부적절한 대체용품을 사용하는 등 사회 문제로 제기되고 있음
- 2016년 '갈창' 생리대 사건 이후 생리대 지원 대상 확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으며, 청소년 건강권 보장을 위해 저소득 청소년에 대한 여성 위생용품 지원이 필요함
- 가출, 빈곤 등 위기 십대여성은 신체적·정신적 건강이 취약하며 사춘기 몸의 변화에 따른 건강한 성장지원 등을 위한 지원체계가 필요함

### 기대 효과

-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지원 및 건강권 보장
- 위기 십대여성을 대상으로 의료·심리·교육·일시생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함

### 연차별 추진 계획

-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급

구분		단위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추진 목표	기본계획	지원 대상 (명)	86,000	11,000	15,000	20,000	20,000	20,000
	수정목표		75,500	11,000	15,000	16,000	16,500	32,600
	실적		30,378	15,263	15,115	15,742	15,216	
소요 예산	기본계획	천원	10,347,000	1,347,000	1,800,000	2,400,000	2,400,000	2,400,000
	확보예산		9,986,000	1,347,000	2,150,000	1,937,000	2,093,000	2,459,000

- 위기 십대여성 공공의료 강화

구분		단위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추진목표	기본계획	지원 대상 (명)	58,100	10,400	11,400	11,400	12,450	12,450
	수정목표		-	-	-	-	9,000	10,000
	실적		49,263	12,214	14,568	9,577	12,904	-
소요예산	기본계획	천원	4,239,000	798,000	821,000	848,000	873,000	899,000
	확보예산		3,869,578	786,046	775,050	785,923	742,737	779,822

## 청소년 보건사각지대 개선

### 주요 내용

####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 지원대상: 만 9~24세 여성청소년 중 조건 해당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복지급여 수급자
  - 만 19~24세: 2022년 5월부터 신청·지원 가능
- 2022년도 지원대상자 수: 36,283명
- 지원금액: 1인당 연간 최대 144,000원(월 12,000원, 반기별 일괄 지급)
- 이용권 신청·사용 절차
  - 서비스 신청(동주민센터) → 카드 신청·발급(카드사) → 이용권 결제(가맹점)
  - 2021년도 신청자는 지원자격 유지하는 경우, 별도 신청 없이 계속 지원

#### 위기 십대여성 공공의료 강화

- 시립 십대여성건강센터 운영을 통해 위기 십대여성을 대상으로 의료, 심리상담, 교육, 기초생활지원서비스 제공
- 가출, 빈곤 등 위기 십대여성을 대상으로 예방의학적 접근을 통해 자궁경부암·독감·간염백신 무료 접종 및 성·건강 교육기능 강화, 코로나블루 대응 정신건강의학과 신규 개설 및 종합적 정신건강 지원, 건강돌봄 통합 사례관리 및 지역돌봄체계 구축



## 데이트폭력·디지털성범죄 해소 및 안심 대책 마련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 필요성

- 정부에서 대학 정보공시 항목에 폭력예방교육 실적 지표를 반영하는 등 나름의 성과는 있었으나 매년 성희롱·성추행·성폭력 사건이 증가하는 추세임
- 데이트폭력은 친밀한 관계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가해자, 피해자, 제3자가 폭력으로 인식하기 어려우며 법적 근거가 미비하고 공적 지원체계도 부족함
-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 및 통신매체 발달에 따라 디지털 성범죄가 진화하고 급증하는 상황임
- 서울시 정보기반(폐쇄 회로 텔레비전, 통합관제센터 등)을 활용, 각종 범죄 위협으로부터 여성(시민) 안전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 타 기관이 제공 중인 위치정보기반 안전서비스는 SOS 정보를 보호자에 전하나, 실시간 모니터링이 불가하고 경찰의 직접 지원을 받지 못해 사업의 실효성이 부족함
- 불법촬영 카메라 관련 범죄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인식됨에 따라 해당 범죄에 대한 경각심 제고 및 근절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이 필요함

### 기대 효과

- 데이트폭력 예방 및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과 홍보를 통한 폭력민감성 제고 및 인식 개선
- 대학의 성평등 의식 확산과 성인지 감수성 제고를 통한 데이트폭력 및 디지털성범죄 예방
- 대학생 대상 폭력예방교육 및 참여형 콘텐츠 개발로 인식개선 및 폭력 민감성 제고
- 데이트폭력,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통한 인권보호
- 범죄 및 폭력으로부터 안심생활권을 확대하고자 자치구 통합관제센터와 폐쇄 회로 텔레비전을 활용한 사회안전서비스 조성
- 지역단위 안전 네트워크 기반 구축으로 안전한 도시 서울 구현

## 데이트폭력·디지털성범죄 해소 및 안심 대책 마련

### 연차별 추진 계획

- 데이트폭력 인식개선교육

구분	단위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추진목표	기본계획	참여인원 (명)	2,500	400	450	500	550	600
	수정목표					3,500	3,000	2,800
	실적		6,461	2,927	3,534	183,034	2,884	
소요예산	기본계획	천원	250,000	40,000	50,000	50,000	50,000	60,000
	확보예산		140,000	40,000	50,000	50,000	50,000	40,000

- 데이트폭력·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구분	단위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추진 목표	기본계획	지원건수 (건)	4,500	800	850	900	950	1,000
	수정목표					500	1,500	450
	실적			858	1,674	1,460	5,453	
소요 예산	기본계획	천원	450,000	80,000	85,000	90,000	95,000	100,000
	확보예산		2,095,000	80,000	1,080,000	430,000	430,000	75,000

- 24시간 스마트 안심망 '안심이' 구축 및 운영

구분	단위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추진목표	구축 및 운영 자치구 (개)	개	25	25	운영	운영	운영	운영
	수정목표							
	실적	개	25	25	25	25	25	25
소요예산	기본계획	천원	2,740,000	1,140,000	400,000	400,000	400,000	400,000
	확보예산	천원	7,277,185	1,140,000	1,219,000	1,686,000	1,441,093	1,791,092

## 데이트폭력·디지털성범죄 해소 및 안심 대책 마련

- 불법촬영 근절을 위한 '불법촬영 시민감시단' 활동 강화

구분		단위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추진목표	기본계획	곳	195,000	60,000	65,000	-	35,000	35,000
	수정목표	인원	82			82		
	실적		203,044	68,280	95,486	79	39,199	-
소요예산	기본계획	천원	8,439,000	1,489,000	1,500,000	1,650,000	1,800,000	2,000,000
	확보예산	천원	4,428,858	815,000	1,578,000	1,735,858	150,000	150,000

## 주요 내용

## 데이트폭력 인식개선교육

- 데이트폭력 등 폭력예방교육
- 예방교육 관련 강의안 개편 등 교육콘텐츠 보강
- 대학생 폭력예방교육 기본과정 온라인 교육콘텐츠 개발
- 강사역량강화 교육 및 모니터링
- 성평등캠퍼스 업무 협정 체결 및 네트워크 강화

## 데이트폭력·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 상담, 법률·의료지원 등 피해자 맞춤 지원, 주변인 교육
- 데이트폭력 상담전용콜 운영
- 데이트폭력 피해자 지원사업 공모 시행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찾아가는 지지동반자' 사업 운영

## 24시간 스마트 안심망 '안심이' 구축 및 운영

- 사업 내용
  - 안심이앱(스마트폰) 위치정보와 서울시 정보기반(폐쇄 회로 텔레비전·통합관제센터 등)을 활용한 24시간 각종 범죄 위협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 안전망 모델

## 데이트폭력·디지털성범죄 해소 및 안심 대책 마련

- 제공 서비스
  - 주요서비스: 귀가모니터링, 긴급신고, 스카우트, 1인 점포 신고
  - 부가서비스: 안심시설물(안심택배함, 안심지킴이집, 1인안심점포) 검색 및 신청
- 추진 내용
  - 안심이 총괄관제센터 운영 및 안심이 통합 유지보수
  - 안심이 전담관제(매칭사업) 사업
  - 안심이앱 기능개선 및 안심귀가택시 도입

## 불법촬영 근절을 위한 '불법촬영 시민감시단' 활동 강화

- 사업 내용
  - 운영인원: 250명(자치구별 10명)
  - 모집자격: 지역 내 자원봉사 활동이 가능한 서울 여성 시민
  - 주요업무
    - 자치구별 특별관리대상 화장실 대상 불법촬영 카메라 점검
    - 사회 인식 개선을 위한 대시민 캠페인 실시 등
- 추진 내용
  - 공공기관 관리인력을 활용하여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점검활동 강화 및 시민감시단 운영을 통한 민간개방화장실 등 점검 및 예방활동 강화
  - 민간화장실에 대해 업종별 관련협회 협력을 통한 불법촬영 자율점검 활동 지원 및 민간건물 소유주 및 관리인 등 점검기기 무상대여 확대 추진

1-7

## 사각지대 노인 돌봄지원 확대

복지본부 어르신복지과

### 필요성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어르신 등 노인층 빈곤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발생
- 서울시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 증가에 따른 치매환자 급증이 예상됨
- 조기검진 및 치매군 관리 비율이 타 시·도에 비해 월등하나 국비지원이 전무함
- 국민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장기요양 등급 인정자에게 재가 및 장기요양시설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 지원 체계 마련이 필요함
- 어르신과 주변인에게 큰 부담을 주는 대표적인 노인성 질환인 '치매'의 경우 조기발견과 지속적 치료·관리가 효과적임

### 기대 효과

-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에 노출된 어르신 선제적 발굴·지원 강화로 경제적 비용부담 경감 및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 유도
- 치매 예방에서 치료까지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조기 예방·발견·치료 지원 One-Stop 서비스 제공으로 치매에서 자유로운 안심도시 서울 구현

### 연차별 추진 계획

- 국민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어르신 돌봄 본인부담금 지원

단위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지원수(명)	736	136	150	150	150	150
소요예산(백만원)	690	122	142	142	142	142

1-7

## 사각지대 노인 돌봄지원 확대

- 치매안심마을

구분	단위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추진 목표	기본계획	곳 (누계)	25	11	25	25	25	25
	수정목표		70				55	70
	실적		63	15	33	50	63	-
소요예산	기본계획	천원	147,465,000	27,500,000	28,462,000	29,458,000	30,489,000	31,556,000
	확보예산		130,909,708	27,904,257	23,786,110	25,416,685	26,156,231	27,646,425

- 데이케어센터(주야간보호) 지속적 확충

단위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곳	368	328	348	368		
소요예산(백만원)	9,900	3,300	3,300	3,300	※요양수요 계측에 따른 확충목표 별도 마련	

### 주요 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의 빈곤층 어르신 발굴·돌봄 지원

-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 제외된 초고령 독거, 고령자 부부 등을 대상으로 노인장기요양 본인부담금 지원 및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국민기초 사각지대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지원
- 국민기초 사각지대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1-7

사각지대 노인 돌봄지원 확대

치매안심센터 기능강화로 '치매안심도시! 서울' 구현

- 기존 서울시치매지원센터의 '치매안심센터'로 기능 확대
- 고위험군 집중검진·관리를 통한 치매 조기 발견
  - 치매 유병률이 급격히 증가하는 연령군(75세) 전수검진 확대
  - 지역사회 연계·협력을 통한 대상자 파악 및 검진 실시
- 검진 경로 다양화 및 접근성 강화로 검진율 향상
  - 방문간호사, 돌봄SOS간호사 협력을 통한 대상자 발굴 및 선별검진 실시
  - 치매안심주치의의를 통한 치매환자 조기발굴 및 관리
- 비대면 인지 건강프로그램 개발 및 확산
  - 치매예방관리(기억지킴교실) 앱 개발 및 보급
  - 식이관리, 신체활동, 인지훈련, 동기강화 정신건강관리 등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촘촘한 치매 안심마을 조성을 위한 점진적 확대 운영
  - 행정동 중심에서 약국, 미용실 등 지역자원 중심 안심마을 확대 운영
  - 각 자치구의 특성에 맞게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치매안심마을 지정·운영
- 치매안심주치의 확대 운영을 통한 치매 예방관리 강화
  - 의료기관과 치매안심센터 간 치매환자 관리 네트워크 형성
  - 해당 의료기관 치매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협의 및 교육지원
  - 치매안심센터 협약 의료기관 연계 모니터링
- 치매인식개선 및 관련 정보 확산을 위한 유튜브 치매전문 채널 운영
  - 월 1회 이상 영상 업로드를 통한 서울시 치매관리사업 홍보 및 관련 정보 전달
  - 유튜브 신규 콘텐츠 제작 및 관리, 유튜브 채널 홍보 이벤트

치매 등 노인성질환자를 위한 데이케어센터 지속적 확충

- 추진목표: 공공성을 확보한 돌봄기반 확충으로 어르신복지 및 부양부담 경감
- 추진방향: 지역실정 및 요양수요에 적합한 설치유형 발굴 지원
- 내용: 치매·중풍 등 요양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성질환 어르신 대비 주야간보호시설이 부족한 자치구에 우선으로 설치비 지원, 지역밀착형 돌봄서비스 제공

1-9

위기다문화가족 등 이주민 인권보호 증진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필요성

-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직면하여 주거공간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이주민을 위해 임시적 피난처 제공이 필요함
- 폭력피해와 생활의 어려움을 겪는 여성 이주민들에게 전문상담이 요구되며, 피해여성과 자녀에게 긴급 의식주 지원이 필요함
- 글로벌센터 등 외국인주민 지원시설 운영을 통해 외국인주민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 인권침해 등 위기 발생 시 전문적 지원의 창구 역할이 필요함

기대 효과

- 서울 생활 초기적응 지원, 종합서비스 제공, 위기 대응 전문서비스 제공으로 서울 거주 외국인의 인권보호 증진
- 외국인주민·난민 관련 인식개선 및 생활안정
- 폭력피해 이주 여성의 인권 보호 증대
- 서울거주 외국인근로자, 다문화가족, 외국인 등 외국인주민의 서울생활 조기 정착에 기여

연차별 추진 계획

- 민간 센터 운영 지원 및 인권보호 프로그램 운영

구분		단위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추진목표	기본계획	단체수	35	7	7	7	7	7
	수정목표							
	실적		29	7	8	7	7	
소요예산	기본계획	천원	1,0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확보예산		900,000	200,000	200,000	200,000	160,000	140,000

1-9

위기다문화가족 등 이주민 인권보호 증진

• 위기 이주여성 안전망 구축

구분		단위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추진목표	기본계획	상담건수 (건)	60,600	12,000	12,000	12,100	12,200	12,300
	수정목표		-	-	-	-	-	-
	실적		95,742	26,161	25,412	21,125	23,044	
소요예산	기본계획	천원	1,908,000	350,000	368,000	380,000	400,000	410,000
	확보예산		3,164,975	350,000	599,998	670,465	769,104	775,408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외국인노동자센터, 글로벌센터 운영 활성화

구분		단위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이용자수	100,403	18,740	19,339	20,024	20,736	21,564	
	수정목표					400,000	500,000	750,000
	실적			447,021	519,909	743,669	-	
소요예산	기본계획	63,270,000	11,917,000	12,275,000	12,643,000	13,022,000	13,413,000	
	확보예산	69,267,516	11,917,000	12,237,767	14,627,231	14,453,126	16,032,392	
외국인노동자센터 운영	이용자수	65,000	12,000	12,500	13,000	13,500	14,000	
	수정목표							
	실적			108,780	68,529	61,617		
소요예산	기본계획	8,353,000	1,574,000	1,621,000	1,669,000	1,719,000	1,770,000	
	확보예산	8,092,965	1,574,000	1,626,829	1,672,380	1,618,471	1,601,285	
글로벌센터 운영	이용자수	334,300	65,000	65,900	66,800	67,800	68,800	
	수정목표							24,200
	실적			90,843	70,191	74,790		
소요예산	기본계획	22,126,000	4,127,000	4,271,000	4,420,000	4,574,000	4,734,000	
	확보예산	12,315,170	4,127,000	2,385,903	2,200,039	2,642,849	959,379	

1-9

위기다문화가족 등 이주민 인권보호 증진

주요 내용

민간 쉼터 운영 지원 및 인권보호 프로그램 운영

- 외국인주민 · 난민 인권보호를 위한 인식개선 프로그램 운영
- 민간 쉼터 운영

위기 이주여성 안전망 구축

- 사업대상: 폭력피해 등 위기 상황에 처한 이주여성 및 동반자녀
- 운영기관: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 법인명: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 위탁기간: 2021. 1. ~ 2023. 12.(재위탁)  
※ 최초위탁: 2015. 1. 1.
- 주요사업: 전문상담, 의료 · 법률지원, 통번역지원단 운영, 한울타리 쉼터 운영 등  
※ 위기 이주여성 지원 one-stop 종합서비스 기관
- 추진 내용: 이주여성상담센터 운영  
※ 전문상담, 의료 · 법률지원, 통번역지원단 운영, 한울타리 쉼터 운영 등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외국인노동자센터, 글로벌센터 운영 활성화

- 외국인지원시설을 통해 서울거주 외국인주민 대상 원스톱 생활서비스 제공 및 노동, 법률 등 분야별 전문상담 지원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25곳): 한국어교육, 기본사업 및 방문교육, 특성화사업
  - 외국인노동자센터 운영(6곳): 한국어교실, 상담 · 의료 지원, 컴퓨터교실 등
  - 글로벌센터 운영(1곳): 생활지원(상담, 교육, 의료), 커뮤니티공간 제공 등

1-12

## 유형별 장애인 자기결정권 강화를 통한 인권 증진

복지본부 장애인복지정책과

### 필요성

- 장애인복지시설과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의 인권침해 · 학대사건 발생 시 신속한 지원을 위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역할 강화가 필요함
- 발달장애인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시설종사자 등은 발달장애인 관련 지식 · 정보 및 대처 기술 등을 보유하지 못해,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요구를 고려한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 발달장애인 지원 역량 향상을 위한 종합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한 질 높은 인적 기반 및 정보 구축 · 운영이 필요함
- 재활(Rehabilitation)을 넘어 가활(Habilitation) 중심의 복지 서비스 운영 체계 구축이 필요함
-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체계 효율화를 통해 시각장애인 이동권 향상이 필요함

### 기대 효과

- 장애인 관련 시설과 재가 장애인 인권침해 관련 조사권 강화를 통한 적극적 장애인 차별 시정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 장애인 권리 보호 · 지원 확대
- 동주민센터, 장애인인권지킴이단, 장애인복지단체 등을 통해 지역사회 장애인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 및 활동 촉진
-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교통수단 등 이동편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 이동권 향상

### 연차별 추진 계획

- 장애인권익옹호기관 기능 확대

구분		단위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추진목표	기본계획	건수	3,600	700	710	720	730	740
	수정목표							
	실적		901	901	1,047	767	847	
소요예산	기본계획	천원	4,410,000	865,000	875,000	885,000	890,000	895,000
	확보예산		5,360,174	841,000	1,082,000	1,112,642	1,224,268	1,100,264

1-12

## 유형별 장애인 자기결정권 강화를 통한 인권 증진

- 발달장애인 전 생애 지원서비스 제공

구분		단위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추진목표	기본계획			플랫폼운영	플랫폼운영	플랫폼운영	가활센터로 기능확대	가활센터로 기능확대
	수정목표			플랫폼구축				플랫폼운영
	실적			플랫폼구축	플랫폼운영	플랫폼운영	플랫폼운영	
소요예산	기본계획	천원	2,000,000	400,000	400,000	400,000	400,000	400,000
	확보예산		1,009,000	400,000	609,000	609,000	148,500	100,000

- 발달장애인 가활 중심의 복지 서비스 제공

구분		단위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추진목표	기본계획			타당성용역	사전절차 · 부지매입	설계 및 신축	센터운영	기능강화
	수정목표			타당성용역	타당성용역	용역결과 분석 등	타당성 검토 및 설계 등	사업추진 재검토
	실적				용역결과	사회보장 재협의 요청	사회보장 재협의	
소요예산	기본계획	천원	17,600,000	100,000	4,500,000	9,000,000	2,000,000	2,000,000
	확보예산		100,000	100,000	-	-	-	-

1-12

유형별 장애인 자기결정권 강화를 통한 인권 증진

- 시각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체계 효율화

구분		단위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추진목표	기본계획	클처리율 (%)	84%	80%	81%	82%	83%	84%
	수정목표							
	실적		76%	55%	66%	75%	76%	
소요예산	기본계획	천원	83,000,000	13,400,000	15,600,000	16,800,000	18,000,000	19,200,000
	확보예산		86,834,697	13,400,000	18,402,306	17,980,873	18,439,217	18,612,301

주요 내용

장애인권익옹호기관 기능 확대

- 장애인 학대,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신고접수, 현장 출동·조사 및 응급 보호·조치
- 피해 장애인과 그 가족, 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사후관리
- 장애인학대, 인권침해 및 차별 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 장애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설치·운영

발달장애인 전 생애 지원서비스 제공

- 발달장애 관련 멀티미디어 콘텐츠 제공·개발 지원
- 발달장애 관련 온라인 지식·정보·기술 공유 플랫폼 유지 보수 및 고도화
- 발달장애인의 웹 접근성을 보장하는 이지리드(Easy Read) 버전의 웹사이트 추가 개발·제작
- 발달장애 관련 지원 인력에 대한 교육·연수·훈련 프로그램 운영

1-12

유형별 장애인 자기결정권 강화를 통한 인권 증진

발달장애인 가할 중심의 복지 서비스 제공

- 발달장애인 가할센터 조성 재검토
  - 위치: 서울시 양천구 신정동
  - 규모: 지하 2층, 지상 4층(시유지: 대지 1,580㎡, 연면적 3,129.74㎡)
  - 주요시설: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연구 및 사업 실천모델 개발·지원, 교육(장애인, 가족, 종사자), 멀티놀이공간, 도전적 행동지원 등
- 가할센터 조성 사전절차 및 설계공모 추진

시각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체계 효율화

- 생활이동지원센터 간담회 및 운영회를 통해 시스템 개선
- 이용권택시 기사와 장애인 안내서비스 교육 강화
- 이동수요 충족을 위한 이용권택시 확대 운영
- 이용권택시 인터넷 등록신청 서비스 실시
- 고객관리 프로그램 및 정산프로그램 도입

1-15

## 자살률을 현격하게 줄여가는 도시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 필요성

- 우리나라 자살률은 OECD 가입국 평균에 비해 두 배로 최고 수준이며, 서울시 연령별 사망원인 1위, 노인 사망자수 최고로 자살예방서비스 마련이 필요함
- 자살률 격차 감소를 위해 자살률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적 특징 분석 및 특성화된 접근 전략이 필요함
- 자살고위험 노인에 대한 집중 관리 및 정신건강증진센터 등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복지서비스 제공이 필요함

### 기대 효과

- 지역사회 기반 주민밀착형 자살예방 사업으로 서울시민 자살예방 안전망 구축 및 생명존중 환경 마련을 통한 자살률 감소
- 의료기관과의 업무협력 체계 구축으로 자살위험군의 조기발굴과 의료체계 확립
- 마음건강주민교육단 조직화 및 교육, 실천활동을 통한 지역사회역량 강화

### 연차별 추진 계획

- 지역사회 기반 자살예방서비스 제공

구분		단위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추진목표	기본계획	자살자수 (인구 10만 명 당)	-	22	21.8	21.6	21.5	21.5
	수정목표							
	실적		22.5	22.5	22.7	(통계부재)	-	
소요예산	기본계획	천원	21,245,565	4,249,113	4,249,113	4,249,113	4,249,113	4,249,113
	확보예산		24,033,122	4,249,113	4,964,204	5,209,195	4,663,549	4,947,061

1-15

## 자살률을 현격하게 줄여가는 도시

### 주요 내용

#### 지역사회 기반 자살예방서비스 제공

- 지역사회 기반 자살예방 대응체계 강화: 자살예방지킴이 양성 및 활동촉진
- 자살시도 대응강화 및 사후관리 지원확대: 24시간 상담전화 운영 및 유족서비스 제공 등
- 자살 유가족 지원: 유족 애도상담, 자조모임 및 사별대상별 소모임 운영, 유족캠프 등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 자살예방 교육, 언론 및 자사로 등 유해환경 모니터링



## 2

## 인권친화적 도시공간 조성

### 정책목표

누구나 차별 없이 도시 공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강화하여 도시 공간에 자유롭게 접근하여 공유하며 창조적으로 사용하고 향유할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 2

## 인권친화적 도시공간 조성

### 세입자 권리보호 지속 추진

#### 사업 내용

-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임대차 관련 원스톱 서비스 제공
- 세입자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차 관련 분쟁의 효율적 해결 및 적시 지원

#### 선정 이유

- 이사 시기 불일치 전월세 보증금 대출상당 및 추천 등 원스톱 서비스 제공으로 주택임대차 관련 상담 및 분쟁조정, 세입자의 원활한 거주이동 지원 필요
- 심각한 전세난 및 월세전환 가속화에 대응한 서민주거안정 및 임차인 권리 제고를 위한 선진 임대차제도 추진 필요
- 주택임대차 관련 상담 및 분쟁 증가에 따른 서민 주거권 보호 및 강화를 위한 서비스 제공 필요

### 모두가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 사업 내용

- 서울재난안전포털시스템 고도화
- 재난안전포털 다국어 서비스
- 화재피해시민 피해구제 및 권익보호

#### 선정 이유

- PC 및 모바일에서 동일한 재난안전정보 콘텐츠 서비스 제공 필요
- 선제적인 재난 예방 강화 필요
- 서울 거주자 및 방문 외국인의 거주 또는 체류 기간 동안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정보 제공 필요
- 실화책임법, 제조물책임 배상, 정보공개요청 증가 등 소방 환경 변화에 따른 화재피해시민 권익보호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
- 이해당사자 간 피해분쟁의 지속적인 발생

인권친화적 도시공간 조성

세부과제 목록

2-1	<b>주거안정을 위한 복지정책 강화</b>		
	① 주택이용권 지원범위 확대	신규	주택정책과
	② 주거복지센터 1차지구 1센터 설치	신규	주택정책과
2-2	<b>세입자 권리보호 지속 추진</b>		
	① 임대차 관련 원스톱 서비스 제공	계속	주택정책과
	② 임대차 관련 분쟁의 효율적 해결 및 적시 지원	계속	주택정책과
2-3	<b>젠트리피케이션 대응책 마련</b>		
	① 주민자치회 주도 지역발전 지원	신규	지역공동체담당관
	②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신규	공정경제과
	③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운영	신규	인권담당관
2-4	<b>2030 청년세대를 위한 주거 기회 제공</b>		
	① 역세권 청년주택 5만호 공급	신규	임대주택과
	② 청년주택 입주자를 위한 입주지원대책 수립	신규	임대주택과
2-5	<b>장애인 탈시설화 사업 지속 추진</b>		
	① 탈시설 민관협의체 구성운영	신규	장애인복지정책과
	② 탈시설 정보제공	신규	장애인복지정책과
	③ 시설별 자립지원계획 수립 의무화	신규	장애인복지정책과
	④ 거주시설 변환 시범 운영	신규	장애인복지정책과
2-6	<b>무장애 도시공간 조성</b>		
	① 버스정류소 교통약자 편의제공	신규	버스정책과
	② 무장애 관광도시를 위한 물리적 환경 개선 및 이동편의 증진	신규	관광정책과
	③ 무장애 관광도시를 위한 관광콘텐츠 개발	신규	관광정책과
	④ 유모차/장애인/여행객 이동권을 고려하는 도시디자인위원회 운영	신규	도시공간개선반
2-7	<b>모두가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도시</b>		
	① 재난약자를 위한 서울재난안전포털시스템 개발 및 구축	신규	상황대응과
	② 재난안전포털 다국어 서비스	신규	상황대응과
	③ 화재피해시민 피해구제 및 권익보호	신규	소방본부 현장대응단
2-8	<b>환경오염을 고려한 시민환경권 증진사업</b>		
	① 시민건강 지키는 미세먼지 줄이기	신규	대기정책과
	② 도시 가로수 확충 및 녹지조성 확대	신규	조경과

세입자 권리보호 지속 추진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필요성

- 심각한 전세난 및 월세전환 가속화에 대응한 서민주거안정 및 임차인 권리 제고를 위한 선진 임대차제도 추진이 필요함
- 주택임대차 관련 세입자와 집주인 간 주거 갈등이 빈번해지면서 사회문제로 제기
- 주택임대차 관련 상담 및 분쟁 증가에 따른 서민 주거권 보호 및 강화를 위한 서비스 제공이 필요함

기대 효과

- 이사 시기 불일치 전월세 보증금 대출상당 및 추천 등 원스톱 서비스 제공으로 주택임차 관련 상담 및 분쟁조정, 세입자의 원활한 거주 이동 지원
- 주택임대차 관련 분쟁의 소송 전 조정을 통한 세입자 주거권 보호 및 전월세시장 안정 도모
-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부 운영을 통해 세입자와 집주인 간 주거 갈등을 신속하게 해결

연차별 추진 계획

-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임대차 관련 원스톱 서비스 제공

구분		단위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추진목표	기본계획	건	186,000	35,000	36,000	37,000	38,000	40,000
	수정목표							
	실적		137,645	36,522	37,383	63,740	47,674	
소요예산	기본계획	천원	801,000	151,000	155,000	160,000	165,000	170,000
	확보예산		364,079	150,692	52,000	48,169	61,359	51,859

- 세입자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차 관련 분쟁의 효율적 해결 및 적시 지원

구분		단위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추진목표	기본계획	조정성립률(%)		70	72	74	76	80
	수정목표	조정건수(건)					55	60
	실적	조정성립률(%)	84	71	56	-	-	
	수정실적	조정건수(건)				51	-	
소요예산	기본계획	천원	190,000	34,000	36,000	38,000	40,000	42,000
	확보예산		152,886	34,200	27,000	21,600	36,000	34,086

## 2-2

## 세입자 권리보호 지속 추진

## 주요 내용

##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임대차 관련 원스톱 서비스 제공

- 사업 내용
  - 운영 방법: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운영
  - 센터 인력: 9명(공무원 5명, 상담요원 4명)
  - 주요 기능: 주택임대차 관련 일반, 법률, 분쟁조정 상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이사 시기 불일치 전월세보증금 대출상담 및 용자 추천
- 주요 업무
  - 임대차 관련 일반 「법률상담에서 대출상담」 지원, 분쟁상담·조정 등 제공
  - 세입자의 원활한 거주이동 지원을 위한 전월세 보증금 대출 지속 추진

## 세입자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차 관련 분쟁의 효율적 해결 및 적시 지원

- 운영 방법: 서울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 구성원: 11명(변호사, 공인중개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교수, 감정평가사 등)
- 위치: 서소문청사 1동 1층 전월세보증금 지원센터 내
- 기능: 주택임대차 관련 분쟁 심의·조정
  - 계약 기간, 보증금 또는 임차주택의 반환에 관한 분쟁
  - 차임·보증금의 증감, 임차주택의 유지·수선의무에 관한 분쟁 등

구분		조정위원회	조정부
구성인원		전체 재적위원 과반수	재적위원 3명
조정대상	임차보증금	제한 없음	5억원 이하
	조정목적값	제한 없음	2억원 이하
기타 절차 등		동 일	

## 2-7

## 모두가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안전총괄본부 상황대응과

## 필요성

- PC 및 모바일에서 동일한 재난안전정보 콘텐츠 서비스 제공이 필요함
- 재난유형별 취약내용을 파악하여 선제적 재난 예방 강화
- 안전문화 조성을 위한 생활 안전 및 재난안전교육 등 예방 위주의 콘텐츠가 필요함
- 도시안전 시정 일원화 서비스 및 홍보를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함
- 서울거주 및 방문 외국인이 거주 및 체류 기간 동안 안전하게 서울살이 및 여행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정보 제공이 필요함
- 실화책임법, 제조물책임 배상, 정보공개요청 증가 등 소방 환경 변화에 따른 화재피해시민 권익보호를 위한 법적 기반 조성

## 기대 효과

- 재난유형별 취약내용을 파악하여 선제적 재난 예방 강화
- 서울안전앱 서비스 전면 개선으로 안전문화 조성
- 실시간 재난정보 제공과 재난상황별 행동요령 서비스 제공으로 재난 피해 예방
- 소송 전 당사자 간 분쟁 조정으로 일상생활 조기 복구
- 제조물결함 화재피해보상 지원 및 제조물 화재감소 유도

2-7

모두가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연차별 추진 계획

- 서울재난안전포털시스템 고도화

구분	단위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추진목표	기본계획		재난안전 포털서비스 개시	2단계 콘텐츠 추가	재난약자 행동요령 추가	포털·앱 이용 활성화	포털·앱 이용 활성화
	수정목표						
	실적		서비스 개시	개발	서비스 개시	포털·앱 이용 활성화	
소요예산	기본계획	500,000			300,000	100,000	100,000
	확보예산	769,058			452,710	97,904	218,444

- 재난안전포털 다국어 서비스

구분	단위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추진목표	기본계획				콘텐츠 추가	웹·앱 유지관리	웹·앱 유지관리
	수정목표			다국어 누리집 구축 (웹·앱)			
	실적			다국어 누리집 구축 (웹·앱)	콘텐츠 추가	웹·앱 유지관리	
소요예산	기본계획	550,000		200,000	100,000	150,000	100,000
	확보예산	262,045			93,990	48,952	119,103

2-7

모두가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 화재피해시민 피해구제 및 권익보호

구분	단위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주택복구 및 생계지원	기본계획	건수	200	30	35	40	45	50
	수정목표		-	-	-	-	-	
	실적		143	45	50	48	41	-
소요예산	기본계획	천원	-	-	-	-	-	
	확보예산	천원	-	-	-	-	-	
화재 피해분쟁 조정위원회	기본계획	횟수	75	5	10	15	20	25
	수정목표		14	-	2	3	4	5
	실적		0	0	0	0	0	-
소요예산	기본계획	천원	70,000	-	10,000	15,000	20,000	25,000
	확보예산	천원	18,000	-	6,000	6,000	6,000	6,000
화재 피해구제 길라잡이	기본계획	건수	1,650	150	300	350	400	450
	수정목표		26,600	-	6,500	6,600	6,700	6,800
	실적		27,955	6,406	7,779	7,180	6,590	-
소요예산	기본계획	천원	70,000	-	10,000	15,000	20,000	25,000
	확보예산	천원	1,650	-	550	550	550	550
화재조사 시스템 개선·강화	기본계획		-	-	시스템 개선·강화	-	-	KOLAS 인정 추진 용역
	수정목표		-	-	-	“화재 증거물 감정센터” 신설 운영	화재조사관 등급제 시행	-
	실적		-	-	-	화재조사 장비보강	화재조사 장비보강	등급제 시행
소요예산	기본계획	천원	500,000	-	500,000	-	-	-
	확보예산	천원	1,652,000	-	1,000,000	642,000	10,000	50,000

※ 주택복구 및 생계지원은 민간단체와 업무 협정 체결

## 모두가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 주요 내용

## 서울재난안전포털시스템 고도화

- 시민이 알기 쉽고 접근하기 쉽도록 정보검색 위주로 재난안전 콘텐츠 제공
- 재난 및 사고속보에 따른 행동요령과 관련정보의 원스톱 서비스
- 재난유형에 따른 시민중심 행동요령 재구성 및 위치기반 맞춤형 서비스
- 재난약자(어린이, 장애인, 노약자 등)에게 유용한 행동요령 추가
- 서울시 특화 및 재난안전정보 콘텐츠의 지속적인 추가
- 사용자 편의를 고려 가독성 있는 형태로 재난안전정보 제공
- 타 기관 시스템과 연계·보완, 재난대비 시설정보 등 GIS DB 갱신
- 사용자 요구에 따른 누리집(PC·모바일웹·앱) 기능 개선
- 서울안전누리 누리집(PC·모바일웹·앱) 콘텐츠 현행화

## 재난안전포털 다국어 서비스

- 다국어 배경지도를 기반으로 사용자 맞춤형 누리집 구축(영·중·일어)
- 기존 재난안전포털과 동질감 유지하면서 언어에 맞는 메뉴 및 디자인 구성
- 실시간 재난정보 제공 및 재난상황별 행동요령 서비스 제공
- 기상정보와 연계 생활·안전지수 서비스(날씨, 미세먼지, 오존, 자외선 등)
- 사용자 위치기반 대피시설정보(대피소, 쉼터) 및 SNS 정보공유 콘텐츠
- 사용자 위치기반 대피소 자동길찾기 서비스
- 신고요령, 응급상황 대처, 지도 데이터 변환 및 수시 정비
- 사용자 요구에 따른 기능 및 디자인 개선
- 서울안전앱 이용 활성화

## 모두가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 화재피해시민 피해구제 및 권익보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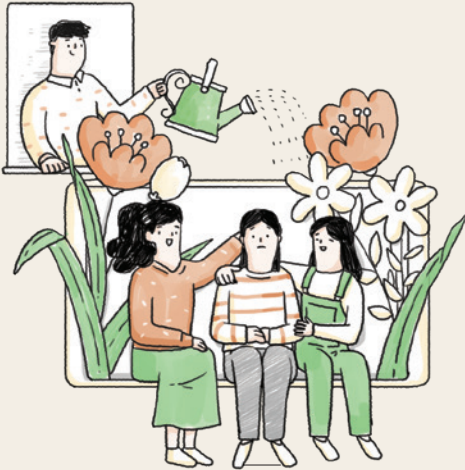
- 사업 주체 및 대상: 소방재난본부 및 소방서
  - 소방재난본부: "화재 증거물 감정센터" 고도화 및 화재조사 전문화 및 역량강화
  - 소방서: 제조물 결함 화재피해보상 등 화재피해자 지원
- 화재 피해자 권익보호를 위한 '화재 증거물 감정센터' 본격 운영
  - 운영시기: 연중
  - 장소: 서울소방학교(은평구 진광동 소재) 종합훈련타워(8~10층)
  - 인력: 감정 전담요원 2명(화재조사관, 박사특채) 확보 완료, 추가 1명 특채 추진
  - ※ 전문 인력풀 구성 및 주요장비 운용: '화재 증거물 감정센터' 인력확보 전 감정 장비 사용자 교육과 주기적인 순환근무 시행
- 화재조사 전문화 및 역량강화
  - 신설 금천소방서 화재조사장비 구매
  - 노후 화재조사장비 교체
  - 한국인정기구(KOLAS) 시험기관 인정 추진(3년 중기 계획)
  - 위험물 의심 물품에 대한 위험물 판정 업무 지원(지속 추진)
  - 화재증거물 관리 전산시스템 추진에 따른 고도화
  - 화재 증거물 감정 표준 매뉴얼(SOP) 제작(지속 추진)
  - 화재조사 연찬대회 및 컨퍼런스 개최(10~11월)
  - 화재조사 담당자 및 증거물 감정 전담요원 특별채용 추진

## 3

## 차이 존중의 인권문화 확산

### 정책목표

사회적 소수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근본적 인식을 개선하여 차이를 존중하고 혐오와 편견을 해소하는 인권문화 확산 정책, 서울에 거주하는 사회적 약자들의 문화적 차이를 존중하고 이를 위해 책임감 있게 연대하며 개인적, 집단적 차이로 차별받지 않는 인권도시 서울을 조성하고자 함



## 3

## 차이 존중의 인권문화 확산

### 다양성 증진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편견 해소

#### 사업 내용

-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 예방 공무원 가이드라인 마련
- 다양성과 포용의 가치 확산을 위한 대시민 캠페인

#### 선정 이유

- 서울은 국제적인 대도시로 다양한 소수자들의 거주 또는 경제활동 비중이 높기 때문에 다양성을 존중하는 문화가 필수적임
- 다양한 도시 거주민을 포용할 수 있는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환경과 문화 조성이 필요함
- 다양성을 존중하고 차이를 포용하는 사회 분위기를 확산하여 인권도시 조성에 기여

### 문화소외시민을 배려하는 문화나눔 확대

#### 사업 내용

-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 공공도서관 확충
- 장애청소년 미술교육지원

#### 선정 이유

- 문화에서 소외된 시민들에게 다양한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문화 양극화 해소
- 도서관 시설의 지역적 불균형과 시민의 지식정보격차 해소에 기여
- 공공도서관 확충으로 지역균형발전 도모
- 장애인 대상 미술교육 대부분이 장애인복지관 등에서 치료 목적으로 운영되는 단순 교육이 많아 '전문 예술교육'에 대한 수요 충족 필요

3

차이 존중의 인권문화 확산

세부과제 목록

성평등 문화 확산			
3-1	①	민관 협력을 통한 학생·교사·학부모의 성평등 교육 추진	신규 여성정책담당관
	②	시민의 직접 참여를 통한 성평등 문화 확산	신규 여성정책담당관
다양성 증진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편견 해소			
3-2	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 예방 공무원 가이드라인 마련	신규 인권담당관
	②	다양성과 포용의 가치 확산을 위한 대시민 캠페인	계속 인권담당관
인권자료 및 인권도시 공간 발굴			
3-3	①	인권관련자료 개발 및 수집 제공	계속 서울도서관
	②	인권도시공간 발굴	계속 인권담당관
문화소외시민을 배려하는 문화니눔 확대			
3-4	①	문화통합이용권	계속 문화예술과
	②	공공도서관 확충	계속 서울도서관
	③	장애청소년 미술교육지원	신규 문화예술과
성소수자 차별 개선 및 인권증진			
3-5	①	성소수자 인권증진 정책 수립	계속 인권담당관
	②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적 인식개선 교육 강화	신규 인권담당관

3-2

다양성 증진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편견 해소

서울혁신기획관 인권담당관

필요성

- 서울은 이주민, 외국인, 유학생이 끊임없이 유입되고 여성, 장애인, 성소수자, 북한이탈주민 등 사회적 소수자가 공존하는 도시임
- 도시를 이루는 구성원의 다양성 증가는 도시의 갈등 요인이 되기도 하지만, 최근에는 도시의 경쟁력을 견인하는 힘이라는 점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
- 서울 역시 다양성 증가와 함께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도 증가하고 있음

기대 효과

- 서울시 거주민과 시 행정에 다양성의 가치 확산
- 다양한 도시 거주민을 포용할 수 있는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환경과 문화 조성
- 다양성을 존중하고 차이를 포용하는 사회 분위기 확산으로 인권도시 서울 조성에 기여

연차별 추진 계획

-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 예방 공무원 가이드라인 마련

단위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대상별 가이드라인		성소수자	북한이탈주민 · 이주민	장애인·노인	아동·청소년	여성
소요예산 (백만원)	25	5	5	5	5	5

- 다양성과 포용의 가치 확산을 위한 대시민 캠페인

구분	단위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추진목표	기본계획	회	5	1	1	1	1
	수정목표						
	실적		1	1	1	2	1
소요예산	기본계획	천원	205,000	41,000	41,000	41,000	41,000
	확보예산	천원	442,800	79,000	89,000	129,000	62,800

## 3-2

## 다양성 증진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편견 해소

## 주요 내용

##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 예방 공무원 가이드라인 마련

- 사회적 소수자 차별 예방을 위한 공무원 가이드라인 내용 작성
  - 인권위원회 등 전문가 자문 및 당사자 인권단체 등 의견 수렴 통해 실효성 제고
  - 시립시설 이용, 대관 및 기타 대민업무 등 서울시정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차별 사례와 유의사항을 대상별(성소수자,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등)로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
- 가이드라인 교육, 홍보 및 지속적 피드백을 통한 내용 갱신
  - 새롭게 발생한 인권침해 또는 차별 사건에 대한 결정례 및 권고 등 반영

## 다양성과 포용의 가치 확산을 위한 대시민 캠페인

- 연중 다양한 인권홍보 및 인권문화행사 등 시민참여형 집중 캠페인 진행
- 인권정책, 인권침해 상담·신고 홍보 및 인권문화행사 개최
  - 정확한 인권정책 정보 제공 등을 위한 소책자·동영상 등 제작·배포
  - 사회적 소수자 관련 전시·강연 등 문화행사 기획
  -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체험형 프로그램 진행
- 인권정책 홍보
  - 인권담당관 10주년 서울 인권백서 제작·배포
  - 서울시 인권침해 상담·신고 홍보 리플릿, 웹툰 제작·배포
  - 콘퍼런스, 포럼, 인권단체 간담회, 인권문화행사 등 홍보자료 제작·배포

## 3-4

## 문화소외시민을 배려하는 문화나눔 확대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 필요성

- 사회 발전의 주요 척도로 개인의 행복과 삶의 질이 부각됨에 따라 이를 향상시킬 수 있는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여 누구도 배제되지 않고 적절한 문화향유 체험의 기회와 자아실현을 위한 지원이 필요함
- 문화예술 관람뿐만 아니라 예술교육, 문화창작활동 증진을 위한 여건 조성
- 도서관 시설의 지역적 불균형과 시민의 지식정보 격차 해소가 요구됨
- 장애인 대상 미술교육 대부분이 장애인복지관 등에서 치료 목적으로 운영되는 단순 교육이 많아 '전문 예술교육'에 대한 수요 충족의 필요성이 제기됨

## 기대 효과

- 문화소의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 창작, 참여 기회 확대를 통한 삶의 질 향상
- 계층, 소득, 연령 등의 차이에 관계없이 시민의 문화적 권리 보장
- 공공도서관 확충을 통해 지역균형발전 도모
- 맞춤형 문화예술교육 지원으로 미술에 재능 있는 발달장애 청소년을 '전문예술인'이 될 수 있도록 자립 유도

## 연차별 추진 계획

- 문화통합이용권 지원

구분	단위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추진목표	기본계획	명	1,355,000	271,000	271,000	271,000	271,000
	수정목표		1,595,921	271,000	276,000	301,585	296,829
	실적		1,212,121	271,375	287,002	312,499	341,245
소요예산	기본계획	천원	116,805,000	19,069,000	21,719,000	21,719,000	27,149,000
	확보예산		119,705,960	19,135,000	22,275,460	27,273,630	33,244,800



3-4

문화소외시민을 배려하는 문화나눔 확대

• 공공도서관 확충

구분		단위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추진목표	기본계획	관	40	8	8	8	8	8
	수정목표		-	-	-	-	-	
	실적		34	9	8	9	8	
소요예산	기본계획	천원	42,500,000	8,500,000	8,500,000	8,500,000	8,500,000	8,500,000
	확보예산		68,766,000	11,492,000	8,522,000	22,183,000	13,034,000	13,535,000

• 장애청소년 미술교육지원

구분		단위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추진목표	기본계획	명	265	50	50	55	55	55
	수정목표		290	50	60	60	60	
	실적		224	44	60	60	60	
소요예산	기본계획	천원	530,000	100,000	100,000	110,000	110,000	110,000
	확보예산		700,000	100,000	150,000	150,000	150,000	150,000

3-4

문화소외시민을 배려하는 문화나눔 확대

주요 내용

문화통합이용권 지원

문화·여행·스포츠 관람 이용이 가능한 개인별 문화누리카드 10만 원권 발급

- 사업대상: 만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450,507명
- 주관기관: (재)서울문화재단
  - ※ 문화체육관광부 '지역주관처'로 지정
- 소요예산: 45,184백만원 [국비 28,993 / 시비 16,191]
  - ※ 카드발급비 45,050,700천원(국비 64.4%, 시비 35.6%), 운영비 133,278천원(시비)

공공도서관 확충

구립 공공도서관 건립사업에 대한 국·시비 보조금 지원

- 지원기준
  - 국비: 단일시설(건립비의 40%, 최대 24억원), 복합시설(건립비의 50%, 최대 50억원)
  - 시비: 연면적 1,650㎡까지 2,665천원/㎡, 자치구 재정수요충족도에 따라 차등 지원
- 13개관 구립공공도서관 건립비 지원
  - 신규 공공도서관 8개 이상 확충

장애청소년 미술교육지원

서울시 거주 9세 이상 24세 이하 발달장애(지적, 자폐) 청소년을 대상으로 미술 이론 및 실기교육, 체험활동, 작품전시회 등 지원

- 추진방법: 공모를 통해 선정된 교육전문단체에서 운영
- 교육인원: 60명 내외
- 교육대상: 서울시 거주 9세 이상 24세 이하 발달장애(지적, 자폐) 청소년
- 교육내용: 미술이론 및 실기(심화 및 전공교육 포함), 체험활동, 작품전시회 등
- 운영단체: 교육실적이 있는 비영리법인·단체 공모 선정 후 교육 운영

## 4

## 인권제도 및 협치 강화

### 정책목표

서울시 인권정책을 공고히 하고 시민들의 참여로 인권제도를 함께 구축하기 위한 정책. 서울시 인권정책 의사결정과정에서 시민참여를 확대하고 인권제도를 함께 만들 권리를 확장하며, 도시들 간의 인권네트워크 조성, 인권실태조사 및 인권영향평가 운영을 강화하고자 함



## 4

## 인권제도 및 협치 강화

### 인권정책 기본계획 이행 내실화

#### 사업 내용

- 인권정책 기본계획 평가
- 인권실태조사 추진

#### 선정 이유

- 인권정책 기본계획의 실행력 확보 필요
- 인권정책 기본계획 사업 담당자의 인권교육 실시로 전문성 제고
- 인권 취약분야 및 사각지대 실태 파악으로 인권정책 기본계획 반영 및 시민의 인권증진을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

### 정보인권 및 알권리 강화

#### 사업 내용

-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 정보접근 취약집단에 대한 지원사업 마련
- 개인정보보호체계 고도화

#### 선정 이유

- 개인정보 등 법령에서 정한 비공개 사항을 제외한 모든 행정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 보장
- 시민의 관심과 요구를 충족하는 사전정보 공개로 실질적 행정정보 공유 실현
- 시민 관심정보, 생활정보의 이해도 제고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행정정보 공개 필요
- 정보공개 서비스 품질 강화로 정보소통광장 개선 필요
- 정보공개 서비스 향상 도모

4

인권제도 및 협치 강화

세부과제 목록

<b>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인권제도적 기반 강화</b>			
4-1	① 인권센터 설치	신규	인권담당관
	② 인권영향평가 실시	신규	인권담당관
	③ 인권아카데미 운영	계속	인권담당관
<b>인권정책 기본계획 이행 내실화</b>			
4-2	① 인권정책 기본계획 평가	계속	인권담당관
	② 인권실태조사 추진	계속	인권담당관
<b>인권 도시 연대 강화</b>			
4-3	① 국제인권도시 네트워크 구축	계속	인권담당관
	② 광역지자체인권도시네트워크 운영 및 역할 강화	계속	인권담당관
	③ 서울시 자치구 인권도시네트워크 회의 구축	신규	인권담당관
	④ 시민단체와의 협력 체계 구축	신규	인권담당관
<b>인권정책결정과정에서 시민참여확대</b>			
4-4	① 서울시 인권위원회 운영	계속	인권담당관
	②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사업	신규	인권담당관
	③ 시민인권배심원제 운영	계속	인권담당관
	④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운영	신규	인권담당관
	⑤ 시민인권보호관 대시민 인권침해 상담 활성화	신규	인권담당관
<b>사회적 약자를 위한 협치 민관 협력</b>			
4-5	① 이주민 민관 협력 체계 구축	계속	외국인문화담당관
	② 북한이탈주민 민관 협력 체계 구축	신규	자치행정과
<b>어린이청소년 참여시스템 체계화</b>			
4-6	① 어린이청소년 참여권 보장을 위한 참여위원회 구성	신규	가족담당관
	② 어린이청소년 참여예산제	신규	시민참여예산담당관
<b>정보인권 및 알권리 강화</b>			
4-7	①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계속	정보공개정책과
	② 정보접근 취약집단에 대한 지원사업 마련	신규	데이터센터
	③ 개인정보보호체계 고도화	계속	정보통신보안담당관
<b>서울시립대 내 인권센터 신설 및 인권교육 강화</b>			
4-8	① 서울시립대 인권센터 개설	신규	서울시립대
	② 인권 관련 교양과목 개설	신규	서울시립대

4-2

인권정책 기본계획 이행 내실화

서울혁신기획관 인권담당관

필요성

- 인권정책 기본계획의 실행력 확보를 위해 매년 정기적인 평가 실시가 필요함
- 인권정책 기본계획 추진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 인권 취약분야 및 사각지대 실태 파악으로 인권정책 기본계획 반영 등 시민의 인권증진을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
- 인권 취약분야 및 사각지대 객관적 실태파악, 문제점 도출이 필요함

기대 효과

- 인권정책 기본계획의 시행 과정, 결과, 보완 사항에 대한 정기적인 검토로 보다 충실하게 인권 시정 추진
- 인권정책 기본계획 평가 및 실태조사 연계를 통한 인권 정책 시너지 효과 유도
- 인권실태 조사 결과 분석 후 개선방안 도출로 문제 개선 도모

연차별 추진 계획

- 인권정책 기본계획 평가

구분		단위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인권정책 기본계획 평가	기본계획	횟수	5	1	1	1	1	1
	수정목표				5	5	5	5
	실적		-	5	6	6		
소요예산	기본계획	천원	5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확보예산		20,000	-	10,000	10,000	90,000	4,000

- 인권실태조사 추진

구분		단위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추진목표	기본계획	실태조사 건수	14	2	3	3	3	3
	수정목표		8	1	2	2	2	1
	실적		8	1	2	3	2	
소요예산	기본계획	천원	737,000	137,000	150,000	150,000	150,000	150,000
	확보예산		592,400	95,600	104,000	174,000	67,200	151,600

## 4-2

## 인권정책 기본계획 이행 내실화

## 주요 내용

## 인권정책 기본계획 평가

- 인권정책 기본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 검토
- 인권정책 기본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인권위원회 심의
- 인권위원회에서 관심분야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하되, 필요시 관련자료 제출 요구 및 소관부서 구두보고
- 인권정책회의 개최
  - 근거: 서울시 인권기본조례 제7조의 2(서울시인권정책회의)
  - 개최목적: 기본계획 수립과 시행에 있어 관계 부서 협의 · 조정 등
  - 참석대상: 관계 부서 실 · 국장급 및 서울시 인권위원회 위원장 (주관: 시장)

## 인권실태조사 추진

- 인권사각지대 발굴 및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 조사대상: 시민의 인권증진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 및 정책 시사점 도출을 위해 시 · 산하기관 협력으로 인권친화적 관점에서 정책개선(안) 도출이 필요한 사업 · 분야로 주제를 선정하여 추진
- 인권실태조사 및 제3차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
  - 시민인권익, 사회적소수자 및 약자의 인권실태를 조사하여 제3차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

## 4-7

## 정보인권 및 알권리 강화

행정국 정보공개정책과

## 필요성

- 사전적, 적극적 정보공개 확대와 행정정보의 투명한 공개로 시민의 알권리 강화 및 열린 시정 구현
- 시민의 관심과 요구를 충족하는 사전정보 공개로 실질적 정보공유 실현
- 정보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보편적 정보접근 기회 및 정보이용환경 조성 마련이 필요함
-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정보화 교육,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이 필요함
- 시민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 관리하기 위한 개인정보보호 체계 강화
- 정보주체 권리강화, 개인정보 보호 인식제고 및 역량활동 강화

## 기대 효과

- 개인정보보호체계 효율화, 장애인 등 정보소외계층의 정보접근 능력 향상, 정보공개 서비스 품질 강화로 시민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시민만족도 향상
- 정보소통광장 개선으로 정보공개 서비스 품질 강화 도모
- 정보공개 직원교육, 처리실태 평가 및 모니터링을 통해 정보공개 서비스 향상 도모
- 전 기관 및 산학 연관 개인정보보호 전문가 구성 및 교육, 심의위원회 등의 운영으로 개인정보보호 민관 협력 강화

## 연차별 추진 계획

-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구분	단위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추진목표	기본계획	공개건수(만건)	2,600	1,800	2,000	2,200	2,500	2,600
		정보공개율(%)	95	95	95	95	95	95
	실적	공개건수(만건)	2,717	1,900	2,183	2,469	2,717	-
		정보공개율(%)	95.3	94.2	95.0	95.3	95.0	-
소요예산	기본계획	천원	5,565,000	1,165,000	1,200,000	1,000,000	1,000,000	1,200,000
	확보예산		5,128,577	1,165,901	1,065,771	938,406	1,054,596	903,903

## 정보인권 및 알권리 강화

## • 정보접근 취약집단에 대한 지원사업 마련

구분		단위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추진 목표	기본계획	교육인원(명)	682,600	136,100	136,400	136,700	136,700	136,700
		보급대수(대)	2,500	500	500	500	500	500
	수정목표	교육인원(명)	64,000	26,000	9,500	8,500	4,800	4,800
		보급대수(대)	1,880		470	440	440	440
	실적	교육인원(명)	40,313	27,492	12,821	4,599	5,360	
		보급대수(대)	971	501	470	451	440	
소요 예산	기본계획	교육	3,056,970	611,394	611,394	611,394	611,394	611,394
		보급	2,432,930	486,586	486,586	486,586	486,586	486,586
	확보예산	교육	1,948,992	611,394	369,448	333,294	317,428	317,428
		보급	2,497,169	486,586	468,284	438,576	437,996	665,727

## • 개인정보보호체계 고도화

구분		단위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추진목표	기본계획	명	6,000	1,200	1,200	1,200	1,200	1,200
	수정목표	명	33,200	1,200	8,000	8,000	8,000	8,000
	실적	명	59,586	8,034	6,128	24,676	20,748	
소요예산	기본계획	천원	40,000	8,000	8,000	8,000	8,000	8,000
	확보예산	천원	32,000	8,000	6,000	6,000	6,000	6,000

## 주요 내용

##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 정보소통광장 개선을 통해 정보공개 서비스 품질 강화
  - 안전한 정보공개 기반 마련 및 정보 간 연계강화를 통해 행정정보 공유·활용 활성화
  - 결재문서 원문공개 및 시민과 밀접한 행정정보 등 정보의 사전적 공개 지속적 확대
  - 시민 관심정보 및 생활정보의 이해도 제고를 위해 행정정보 가공·제공

## 정보인권 및 알권리 강화

## • 정보공개 제도 운영 및 관리

- 행정정보 사전공개, 위원회 회의록 공개 등 사전적·적극적 정보공개 추진
- 공개 청구된 행정정보의 공개여부, 이의신청 등 심의를 위한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 정보공개 직원교육, 처리실태 평가 및 모니터링을 통한 정보공개 서비스 향상 도모

## • 시민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콘텐츠 제작

## 정보접근 취약집단에 대한 지원사업 마련

- 집합 정보화교육 교육운영비 보조(과기부 국·시비 매칭사업)
  - 교육대상: 장애인(직계가족 포함)
  - 추진방법: 공모를 통해 선정된 기관과 협약 후 강사비, 운영비를 지원
  - 장애인 15개 기관(21,024천원/기관)
  - 교육목표
    - 교육 시간: 장애인교육 연 720시간/기관
    - 교육인원(총): 장애인 4,800명/년
-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지원(과기부 국·시비 매칭사업)
  - 지원대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판정 받은 자
  - 보급수량: 440대
  - 지원품목: 특수마우스, 스크린리더, 영상전화기 등 9종
  - 추진방법: 신청자 심사평가 후 선정자에 보조기기 가격의 80~90% 지원

## 개인정보보호체계 고도화

-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진단평가 및 관리실태 이행점검
  -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진단 대비 사전진단 및 관리실태 이행점검 컨설팅 수행
- 개인정보 가명처리 지원센터 운영
  - 안전한 가명정보 내·외부 제공 및 활용 확대, 가명처리솔루션 구매, 가명처리 지원 컨설팅
- 서울시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 수립
  - 서울시 개인정보보호 중기 추진과제 선정 및 추진전략 도출, 신기술 확산에 따른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세부 추진과제 제시
- 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 개최
  - 시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정책 자문 또는 심의
- 개인정보보호 인식제고 및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등 실시

##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시행 2022. 12. 30.]

[서울특별시조례 제8589호, 2022. 12. 30., 일부개정]

서울특별시(인권담당관), 02-2133-6387

### 제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집행하도록 함으로써, 모든 시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여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0. 8.>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9. 29., 2019. 3. 28.>

1. “인권”이라 함은 헌법과 법률이 규정하고 있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이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시민”이라 함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사람, 체류하고 있는 사람, 시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노동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인권도시”라 함은 모든 시민의 인권이 생활 속에서 실현되며 행복한 도시공동체를 구현해 나가는 도시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 ① 시민의 인권과 관련한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내용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시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 제4조(시장의 의무)

- ①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인권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하 “인권부서”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6. 9. 29.>
- ② 시장은 인권정책 수립에 있어 시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시민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인권침해의 시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④ 시장은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 제5조(시민의 참여)

시민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주체라는 점을 인식하여 인권의식의 향상에 노력하고, 시의 인권정책에 참여한다.

#### 제6조(인권존중 및 차별금지)

- ① 모든 시민은 인권을 존중받으며, 「대한민국헌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 등 관계 법령에서 금지하는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6. 9. 29.>
- ② 제20조 제1항의 인권침해를 당한 시민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인권부서에 그에 관하여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6. 9. 29.>

### 제2장 인권도시 정책

#### 제7조(인권정책 기본계획)

- ① 시장은 시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인권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16.>
  1. 인권정책 기본 방향
  2. 분야별 핵심 정책과제, 추진목표 및 실행계획
  3.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소요재원
  4. 인권 관련 조사·연구 및 인권교육 실시
  5.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가 및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6. 인권현장 탐방 사업의 실행계획

##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 7. 그 밖에 인권도시 추진에 관한 주요 사항

-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 ④ 시장은 인권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⑤ 시장은 기본계획 기간이 만료된 후 6개월 이내에 그 추진사항을 평가하여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⑥ 시장은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연도별 인권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6. 9. 29.〉

### 제7조의2(서울시인권정책회의)

- ①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서울시인권정책회의(이하 "정책회의"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 ② 정책회의는 시장이 주관하며, 관계 부서 실·국장급 공무원과 서울시 인권위원장이 참석한다.
- ③ 정책회의는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있어 관계 부서 간 협의·조정이 필요한 사항, 그 밖에 중요한 인권정책으로 통일적인 인권정책 수립을 위하여 관계 부서 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을 협의·조정한다.〈개정 2019. 12. 31.〉
- ④ 삭제 〈2022.12.30〉
- ⑤ 정책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인권부서의 장이 된다.  
〔본조신설 2016. 9. 29.〕

### 제8조(인권영향평가)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6. 9. 29.〕

### 제9조(인권보고서 발간)

시장은 2년 주기로 서울시민 인권보고서를 발간하여야 한다.

### 제10조(인권교육)

- ① 시장 및 시가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 시의 사무위탁기관 및 시의 지원을 받는 각종 복지시설의 장은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이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하며, 사업장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인권교육이 시행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인권교육체계 마련과 효과적 시행을 위하여 인권교육 교재 개발, 인권교육 강사 양성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 제11조(인권센터)

- ① 시장은 시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인권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 중 필요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6. 9. 29.〉
  1. 인권침해사항에 대한 접수 및 상담
  2. 인권 관련 실태조사
  3. 인권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홍보
  4.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연구
  5. 인권지수 연구 및 개발 관련 사항
  6. 서울시인권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요청하는 사항
  7. 그 밖에 시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12조(서울시민 인권헌장)

시장은 인권을 존중하는 가치를 구현하고 지속 가능한 인권도시를 만들기 위해 서울시민 인권헌장을 제정하여 선포한다.

### 제13조(인권 보호 및 증진 활동 지원 등)

- ① 시장은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재정적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각각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5. 5. 14.〉

### 제13조의2(교류협력 등)

- ① 시장은 인권도시 구현을 위하여 국내외 정부·지방정부 및 비정부기구와 교류 및 협력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제항에 따른 교류 및 협력사업 등을 위해 관련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에게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9. 29.〕

##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 제13조의3(세계인권선언일 기념 등)

시장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문화 환경 조성을 위하여 세계인권선언 선포일을 전후하여 이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0.5]

## 제3장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 제14조(설치)

- ① 시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주요 시책에 대한 심의·자문을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6. 9. 29.>
- ② 인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6. 9. 29., 2020. 10. 5.>
  1.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심의·자문
  2. 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에 대한 심의·자문  
2의2. 삭제 <2021.9.30>
  3. 시민의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법규, 정책에 대한 자문
  4. 인권센터 운영에 대한 자문
  5. 그 밖에 시장, 위원장 또는 위원회 위원 3명 이상이 제안한 사안에 대한 심의·자문
  6. 제17조제2항에 따른 정책 등의 개선 권고
- ③ 인권위원회는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시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18조에 따른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에 인권침해 사항에 대한 조사를 의뢰하고, 시 인권정책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6. 9. 29.>

### 제15조(구성)

- ① 인권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6. 9. 29.>
-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1명을 포함한 2명은 시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16. 1. 7., 2019. 3. 28.>
  1. 인권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고 학계에서 인권 관련 연구경험이 있는 사람
  2. 인권분야 정부기관, 비영리 민간단체·법인, 국제기구 등에서 근무경험이 있는 사람

##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3. 인권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인권분야 근무경험이 있고 인권관련 비영리 민간단체·법인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4. 시 인권업무 담당부서의 4급이상 공무원(당연직으로 한다)
- ③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6. 9. 29.>
-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6. 9. 29.>
1. 위원이 일신상의 사고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자주 불참하거나 위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히 손상하는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16조(운영)

- ① 위원장은 인권위원회를 대표하고, 인권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6. 9. 29.>
- ②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4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0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③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 ④ 위원회에는 필요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6. 9. 29.>
- ⑤ 위원회의 모든 회의는 공개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의 성격상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거나 관련된 사람들의 인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회의를 비공개로 하거나 회의록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 ⑥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⑦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인권부서의 담당사무원이 된다. <개정 2016. 9. 29., 2019. 3. 28.>

### 제17조(정책 등의 개선 권고)

- ① 시장은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내용의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할 경우 인권위원회의 심의·자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6. 9. 29.>
- ② 인권위원회는 시의 자치법규, 정책 등이 시민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6. 9. 29.>



OUTRO

##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 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권고를 받은 경우 그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29.>

## 제4장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lt;개정 2016. 9. 29.&gt;

## 제18조(설치 및 기능)

- ① 시장은 시민의 인권보호 및 침해의 구제를 위하여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이하 "구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 9. 29., 2022.12.30>
- ② 구제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2.12.30>
1. 제20조제3항에 따른 인권보호관이 조사하여 회부한 사안의 인권침해결정 및 시정권고에 대한 사항
  2. 제20조제3항에 따른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을 때의 조사여부에 대한 사항
  3. 인권위원회에 인권 관련 서울시 정책의 개선 건의에 대한 사항
  4. 그 밖에 구제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시장이 인권보호 및 침해의 구제를 위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③ 삭제 <2022.12.30>
- ④ 삭제 <2022.12.30>
- ⑤ 삭제 <2022.12.30>
- ⑥ 삭제 <2022.12.30>
- ⑦ 삭제 <2022.12.30>
- [제목개정 2022.12.30]

## 제19조(구성)

- ① 구제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 ② 구제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 이상으로 있었던 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

OUTRO

##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었던 기간이 합산하여 5년 이상인 사람
  3.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한 기간이 10년 이상이며 그 가운데 감사·조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
  4. 인권 관련 국제기구나 비영리 법인·민간단체에서 근무하는 등 활동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으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 ③ 구제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새로 시작한다.
- ④ 구제위원회 위원의 해촉 등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전문개정 2022.12.30]

## 제19조의2(위원장 직무 등)

- ① 위원장은 구제위원회를 대표하고 구제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으로 최장기간 재직할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재직기간이 같은 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본조신설 2022.12.30]

## 제19조의3(운영)

- ① 구제위원회는 월 1회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3명 이상의 위원이 요구하는 경우 임시회를 소집한다.
- ② 구제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인권침해 결정 및 시정권고에 대한 사항은 구제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본조신설 2022.12.30]

## 제19조의4(시정권고 및 후속조치)

- ① 구제위원회는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판단한 경우 시장에게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구제위원회의 의결 내용과 시정권고 사항을 신청인 및 피신청인, 조사 대상기관의 장 등 관련 당사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③ 구제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정권고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표가 제한되거나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OUTRO

##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④ 시정권고 통지를 받은 조사대상기관의 장 및 조사대상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내용을 존중하여 조치하여야 하며, 통지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시정권고에 따른 조치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시정권고 사항에 대한 대상기관의 이행실태를 연 1회 점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12.30]

### 제19조의5(구제위원회 지원)

- ① 구제위원회는 그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시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구제위원회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조사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인력을 둘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구제위원회 회의에 참여한 위원 및 조사에 참여한 외부전문가의 수당 등 제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12.30]

## 제5장 시민인권보호관 <신설 2022.12.30>

### 제20조(설치 및 기능)

- ① 시장은 시민의 인권보호 및 침해의 구제를 위한 조사업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시민인권보호관(이하 “인권보호관”)을 둔다.<신설 2022.12.30>
- ② 인권보호관은 임기제공무원으로 하고, 「지방공무원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임용한다.<신설 2022.12.30>
- ③ 인권보호관은 인권부서에 상담 신청 등이 접수되었거나 시장 또는 인권위원회가 의뢰한 다음 각 호 기관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인권침해 사항(직장 내 괴롭힘 사항 제외)에 대하여 조사한다. 다만,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을 때에는 구제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사할 수 있다.<개정 2015. 10. 8., 2016. 9. 29, 2022.12.30>
  1. 시 및 그 소속 행정기관
  2. 자치구(시의 위임사무와 서울 소재 자치구의 구청장이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하여 조사를 의뢰한 사항에 한한다)
  3. 시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
  4. 시의 사무위탁기관(시의 위탁사무에 한한다)

OUTRO

##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5. 시의 지원을 받는 각종 복지 시설

④ 인권보호관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을 조사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6호 및 제7호의 경우 구제위원회가 조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9. 3. 28., 2022.12.30>

1. 인권침해를 당한 사람 이외의 제3자가 한 신청에 대하여 본인이 조사를 원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
2.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3. 신청이 현저하게 이유가 없거나 거짓이거나 인권보호 이외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이루어졌음이 명백한 경우
4. 신청의 내용이 제3항에 규정된 인권보호관의 조사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5. 구제위원회가 기각한 신청과 같은 사실에 대하여 다시 신청한 경우
6.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나서 신청한 경우
7.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권리구제절차나 조정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제목개정 2022.12.30]

### 제20조의2(조사수행)

- ① 인권보호관은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제20조제3항 각 호의 기관에 대한 현장조사·문서열람·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대상자에게 보고·자료제출 및 출석·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제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③ 인권보호관은 사건의 조사를 마친 후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차회 구제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④ 인권보호관은 조사에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 등을 조사에 참여하도록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12.30]

### 제21조(구제위원회 및 인권보호관 제척 등)

위원 및 인권보호관은 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결정에서 제척된다.<개정 2022.12.30>

OUTRO

##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1. 위원 및 인권보호관이나 그 배우자 또는 그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 및 인권보호관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 및 인권보호관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 및 인권보호관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 및 인권보호관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수사, 재판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 절차에 관여하였던 경우

[전문개정 2016. 9. 29.]

[제목개정 2022.12.30]

### 제22조 삭제 <2022.12.30>

### 제23조 삭제 <2022.12.30>

### 제24조(시민인권배심회의)

- ① 구제위원회는 인권침해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 중 특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관하여 시민인권배심회의를 개최하여 인권침해 여부에 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② 시민인권배심회의의 의견은 구제위원회를 구속하지 아니한다.
- ③ 시민인권배심회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 9. 29.]

### 제25조 삭제 <2022.12.30>

###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에서 이동 &lt;2016. 9. 29.&gt;]

OUTRO

##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 부칙 <제8589호, 2022.12.30>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종전 위촉위원의 임기 및 연임에 관한 경과조치)

-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위원들의 임기는 제19조제3항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최초로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이 조례 시행 전에 한 차례 이상 연임하여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에는 연임할 수 없다.

####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 ① 서울특별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제3항

전단 중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제20조에 따라 시민인권보호관에게”를 “감사위원회에”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시민인권보호관의 권한”을 “권한”으로,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를 “감사위원회”로 한다.



보호종료아동을 위한 자립체험주택  
사진\_연합뉴스



▽북돋움 724Y  
평소 혼자 생활하는 김모씨



청소노동자 휴식벤치  
사진\_연합뉴스



▽북돋움 724Y  
화파 이현숙을 공공기관



어르신 키오스크 교육  
사진\_연합뉴스



▽북돋움 724Y  
유류 높은 물류높은 김모씨

